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028
------	------

2022.02.10.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년 1월 10일, 김용석 의원(찬성자 14명)

나. 회부일자 : 2022년 1월 25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22.2.1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용석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사랑상품권의 활용 규모와 범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바일 앱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의 구매 및 이용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시민의 이용 편의를 개선, 장애인이 상품권을 구매 및 이용 등을 규정하는 시장의 책무 신설(안 제2조의2)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서울사랑상품권의 보급과 이용 활성화, 이용 편의 개선, 장애인의 서울사랑상품권 구매와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한 책무를 시장에게 부여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서울사랑상품권의 운영 현황

- 서울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등의 소득향상과 지역 자본의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어 2020년 6,510억원, 2021년 1조 816억원을 발행하였으며, 올해는 8,417억원을 발행할 예정임.

< 2022년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

사업명	예산액	발행규모(예정액)
서울 광역 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	56억 5천 5백만원(전액시비)	817억원 (상반기 600억원, 하반기 217억원) ※ 법인용 상품권 100억원 포함(상반기)
서울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	당초 224억 6천만원(정부 균특보조금 56억원, 시비 168억 6천만원)	2,600억원 (추경 이후 발행예정)
	추가 400억원(국고보조금 100억원, 시비 300억원)	5,000억원 (new서울사랑상품권)

- 서울시 여론조사¹⁾에 따르면, 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40.6%), 소상공인 보호(21.2%), 가계지출부담 완화(20.1%), 전통시장 활성화(16.5%)에 유용하다고 응답해 정책목표에 충실히 부합한 사업으로 작동하고 있음.
- 한편, 서울시는 상품권의 판매·운영대행사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판매대행점 자격요건²⁾에 미치지 못하고 협약기간이 만료(2021.12.31.)됨에 따라 공모를 통해 ‘신한컨소시엄’ 을 새로운 판매·운영대행사로 선정 (2021.11.23.)하였음.

1) ‘서울시민대상 서울사랑상품권 만족도 여론조사’(2021.7.), 리얼미터.

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판매대행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 판매, 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 신한컨소시엄 참여사 현황 >

구분	업체명	역할
주사업자	신한카드	- 서울시 행정혁신 플랫폼 개발·운영 - 상품권 판매대행·가맹점 모집
공동사업자	신한은행	- 상품권 자금관리 - 은행거래 연계
	카카오페이	- 가맹점 결제환경 구축 - 정책홍보 알림톡 서비스
	티머니	- 상품권앱을 통한 대중교통서비스 충전·이용 시스템 구축

- 이에 따라 기존에 상품권 구매와 이용을 위해 사용되던 22개 모바일앱 대신 ‘신한컨소시엄’의 7개 모바일앱으로만 이용이 가능하여 이용자의 불편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으며, 가맹점 정보에 대한 이관 문제로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다. 시장의 책무 신설(안 제2조의2)

- 개정안은 상품권의 보급과 이용 활성화, 시민의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상품권 발행과 운영과정 전반에 대한 단체장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였음.
- 이 중 상품권의 구매·이용시에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새로 규정한 것은 장애인이 상품권의 구매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국회와 언론 등의 지적을 고려한 것임.
- 선불충전카드식이나 지류상품권을 병행하여 상품권을 발행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서울사랑상품권은 모바일방식으로만 발행하고 있어 장애인 등의 상품권 이용접근성이 취약한 상황임.

- 이에 상품권 모바일앱을 이용할 때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³⁾을 위한 ‘모바일접근성 인증’⁴⁾을 받도록 시스템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음.
 - 기존 상품권 모바일앱 22개 중 6개만 모바일접근성 인증을 받았으며, 신규 상품권 모바일앱 7개는 모두 모바일접근성 인증을 받지 않았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⁵⁾은 정보접근에 있어 장애인 차별금지를 마련하고 있고, 서울시 조례⁶⁾에서도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상품권의 이용에 따른 장애인 차별 금지와 불편해소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정보취약계층 중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차별금지의 대상을 정보취약계층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3) 장애인·고령자 등 신체적·사회적·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

4)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가 장애인과 고령자에게 비 장애인과 동등하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콘텐츠가 제작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증이며, 유효기간은 1년임.

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6)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 또한, 상품권 운영·판매대행사의 교체에 따라 연동되는 상품권 모바일앱도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운영·판매대행사와의 계약조건에 정보취약계층의 모바일접근성 인증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요지

가. 수정이유

- 장애인을 비롯한 고령자 등의 다른 정보취약계층까지 차별금지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 수정함.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차별금지의 대상을 정보취약계층까지 확대함(안 제2조의2제3항).

VI.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028
----------	---------

제안년월일 : 2022년 2월 10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장애인을 비롯한 고령자 등의 다른 정보취약계층까지 차별금지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 수정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차별금지의 대상을 정보취약계층까지 확대함(안 제2조의2제3항).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의2제3항 중 “장애인이” 를 “정보취약계층이” 로 하고, “장애를 이유로” 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로 각각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의2(시장의 책무) ①~② (생략)</p> <p>③ 시장은 <u>장애인이</u> 상품권을 구매 및 이용하는 과정에서 <u>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u> 하여야 한다.</p>	<p>제2조의2(시장의 책무) ①~② (조례안과 같음)</p> <p>③ ----- <u>정보취약계층이</u> ----- ----- <u>합리적인 이유 없이</u> -----.</p>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조의2(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상품권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이 상품권을 구매 및 이용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2조의2(시장의 책무)</u>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상품권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이 상품권을 구매 및 이용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